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54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 박홍근 • 서영교 • 박정현

박 정・박주민・이기헌

김남희 • 염태영 • 오세희

김남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법」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기획 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 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제1조(「관세법」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제3호를 삭제한다.
- 제2조(「관세사법」의 개정)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삭제한다.
- 제3조(「세무사법」의 개정)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 제4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호를 삭제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관세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	
영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에	l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	
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	
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	
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u>아니한 자</u>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관세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5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		
세사가 될 수 없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세무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u><삭 제></u>	
되지 아니한 사람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	제7조(면허등의 제한)
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	
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	
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u><삭 제></u>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